

## 싱가포르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현균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결제수단의 등장을 촉진시켰고, 핸드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 간편송금서비스 등 핀테크(FinTech)는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어문화권, 개방적인 시장조건, 17%의 낮은 법인세, 투명한 경영문화<sup>1)</sup>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예전부터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싱가포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결제환경에 대응하여 핀테크 분야에서도 라이벌인 영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기술혁신성, 기업건전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21일 안에 사업허가를 내주는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Sandbox Express)'를 2018년 11월 14일 시행하여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디지털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7년 8월 제정, 2018년 11월 개정하여 싱가포르 국내에서 디지털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은 물론 디지털토큰을 취급하는 플랫폼 및 중개업자들에게까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핀테크 영역에서의 규제와 장려를 균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는 2019년 1월 14일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Payment Service Act 2019 ; 이하 'PSA 2019')」을 제정하였고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PSA 2019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과 정책의 현황

PSA 2019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과 관련 정책의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가순위에서 2017년 기준 세계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총수는 물론 주주, 임직원이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투명한 경영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거점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최광일, 「핀테크」 싱가포르의 「핀테크 천국」...세계 뭉치돈 몰린다, 2018년 5월 3일 인사이트코리아 칼럼,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3>>, (최종 검색일 : 19년 6월 27일)).

## 1.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의 현황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1,118억 US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sup>2)</sup> 그 가운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약 20.3%인 227억 US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3)</sup>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주요 핀테크 산업의 투자 사례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 2018년 싱가포르 주요 핀테크 산업 투자 사례<sup>4)</sup>

기업명	분야	투자 규모 (2018/전체)
Grab	차량공유, 모바일결제, O2O서비스	\$30억 / \$73억
Republic Protocol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3400만 / \$3400만
Tryb Group	금융투자플랫폼	\$3000만 / \$3000만
Funding Societies	P2P 대출	\$2500만 / \$3260만
Bluezelle	블록체인 솔루션	\$2050만 / \$2230만
Singapore Life	인슈어테크	\$2000만 / \$8300만
InstaReM	결제, 송금	\$2000만 / \$3800만

## 2. 싱가포르 핀테크 정책의 현황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투자 속에서 싱가포르는 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 분야, 로보-어드바이저(robot-advisor) 분야, 블록체인(Block Chain) 분야를 핀테크 주력 분야로 선정하여 핀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III PSA 2019의 주요 내용

### 1. 목적

기술발달로 변화된 결제방법과 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허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PSA 2019를 제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법되어 있던 「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the Payment

2 Ian Pollari, Anton Ruddenklu, 「The Pulse of fintech 2018」,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13 February 2019, p10.

3 Ibid, p57.

4 조혜원, "혁신과 합리적인 규제로 고성장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19년 3월 21일자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3889>>, (최종 검색일 : 19년 6월 27일).

Systems Act 2006)」과 「환전 및 송금 사업에 관한 법률(the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1979)」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또한, PSA 2019는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 2. 결제서비스의 종류

PSA 2019의 규율을 받는 결제서비스의 종류는 PSA 2019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계좌개설(account issuance), 국내송금(domestic money transfers), 국제송금(cross border money transfers), 가맹점 인수(merchant acquisition), 전자화폐 발행(e-money issuance), 디지털토큰(digital payment token), 환전(money-changing) 등 7가지이다.

## 3. 적용대상

싱가포르 내에서 계좌개설,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환전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물론 디지털토큰을 발행, 디지털토큰을 중개하거나 디지털토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 4. 지정제도(Designation)와 면허제도(Licensing)

PSA 2019의 규율을 받는 7가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PSA 2019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지정을 받거나, 또는 PSA 2019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지정제도(Designation Regime)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다른 결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제 서비스를 PSA 2019 제4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제도는 舊「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the Payment Systems Act 2006)」에서도 규정되어 있었는데, 싱가포르 국내 금융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어 이 법률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지만,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sup>5)</sup>

5 Oh et al., 「The Payment Services Act and how it affects FinTech in Singapore」, Dentons, 27 May 2019, p1.

## (2) 면허제도(Licensing)

싱가포르 통화청은 허가제도를 통해서 각각의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에 맞추어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하다.<sup>6)</sup> PSA 2019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는 환전면허(Money-changing license), 일반결제기관면허(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se), 주요결제기관면허(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 등 3가지이다.

### (가) 환전면허(Money-changing license)

일반결제기관면허 또는 주요결제기관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전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필요하다(PSA 2019 제6조 제3항). 하지만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전서비스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환전면허 대신 일반결제기관면허 또는 주요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PSA 2019 제6조 제4항 (b)호).

### (나) 일반결제기관면허(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se)

PSA 2019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7가지 서비스 가운데 환전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결제기관은 주요결제기관보다 거래량 및 전자화폐 유동성 등의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주요결제기관에 비해 규제가 약하고 혁신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영구적인 샌드박스 형태의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결제기관면허 소지자는 제16조 제3항 등의 공개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담하며, 기술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 사정변경시 라이선스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며, CEO 등 주요보직자 임명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보유량의 통제를 받는다.<sup>7)</sup>

### (다) 주요결제기관면허(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

PSA 2019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PSA 2019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결제기관면허 대신 주요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PSA 2019 제6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요건은 일평균 거래량이 3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거나,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일평균 5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주요결제기관은 일반결제기관이 받는 거래량과 전자화폐 유동성 등의 제약이 없는 대신 사업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주요결제기관면허 소지자는 표준결제기관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에

6 Oh et al., *Ibid*, p1.

7 Oh et al., *Ibid*, pp.6~7.

덧붙여 제23조(고객에게 받은 자금에 대한 보호), 제24조(e-머니를 포함한 개인계좌 개설 금지) 등 e-머니 유통과 조달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 5.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PSA 2019에서는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암호화폐를 가치저장수단(거래 또는 교환의 매개체)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 조항도 신설하였다.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는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국경의 제한 없이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sup>8)</sup>를 전면금지하였다.<sup>9)</sup>

하지만, PSA 2019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내에서 디지털 결제토큰을 거래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 AML)'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CFT)'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등 PSA 2019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 법률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결제서비스 관련 법률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율과 다른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적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 결제서비스 관련 법률의 체계

전자금융일반	계약적 측면	개인정보보호	업종별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은행업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법

8 Coin Sale, Coin Pre-sale, Crowd Sale, Token Sale, Token Launching, Crowd Funding, Fundrais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는 보도자료에서 ICO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준영, 김계정, 문준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 203~204면.

9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보도자료, 2017.9.29.

한편, 우리나라는 카카오페이(KakaoPay), 삼성페이(SamsungPay), 토스(toss) 등 간편결제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밖의 중·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의 활동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 초기 금융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고, 금융업 승인 심사를 받는데 수개월이 지체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핀테크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업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 등 실정법상 규제에 막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싱가포르 PSA 2019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허가요건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여 소규모사업자들은 비교적 규제가 작은 일반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게 함과 동시에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를 통해 면허를 쉽게 발급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을 촉진하고, 위험성이 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주요결제기관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테러자금 조달방지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기술적 위험방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핀테크 산업의 진흥과 금융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제수단을 '현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디지털토큰' 등 까지 확대하였고, 암호화폐 발행기관은 물론 중개·거래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의 영역에 포함해 법적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싱가포르 PSA 2019를 통해서 우리나라 결제서비스 법률의 개정방향을 도출해보자면, 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② 서비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등 시장진출을 진흥해야 할 것이며, ③ 암호화폐, 디지털토큰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저장수단으로 법률에 규제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④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기관은 물론 중개·거래플랫폼사업자, 그리고 대규모 결제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V 마치며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ICO)가 원격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제혜택 등 금융여건이 뛰어난 싱가포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PSA 2019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계좌개설,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환전, 디지털토큰 발행과 중개·거래소 운영 등의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전면허, 일반결제기관면허, 주요결제기관면허 등 면허의 종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PSA 2019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법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암호화폐를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전면금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핀테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를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규제함과 동시에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위험성이 적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핀테크 관련 법률에의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보도자료, 2017.9.29.

김준영, 김계정, 문준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

조혜원, “혁신과 합리적인 규제로 고성장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19년 3월 21일자 KOTRA 해외시장뉴스.

최광일, “[핀테크] 싱가포르는 ‘핀테크 천국’...세계 뭉치돈 몰린다”, 2018년 5월 3일 인사이트코리아 칼럼.

Ian Pollari, Anton Ruddenklau, 「The Pulse of fintech 2018」,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13 February 2019.

Kenneth Oh, Jacqueline Loke, Li Chuan Hsu, Yi Jing Teo, 「The Payment Services Act and how it affects FinTech in Singapore」, Dentons, 27 May 2019.